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외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이하 “회사” 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이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외화)”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회사”에게 외화가상계좌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가상계좌”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회사”가 “회사” 소유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예금계좌와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합니다.

제3조(업무내용)

이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외화가상계좌의 사용용도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외화가상계좌의 사용용도(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② 업무의 범위

1. 계좌개설서비스: “은행”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사용할 외화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회사”에 전송하는 업무
2. 입금 및 통지서비스: “회사”의 고객에게 부여한 “회사”의 외화가상계좌에 입금된 외화자금을 “회사” 가 지정한 (외화)모계좌 (이하 “입금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하는 업무 및 입금된 거래내역을 “회사”에 전송하는 업무
3. 조회서비스: “회사”의 외화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회사”가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

제4조(업무처리 및 자금정산시간)

- ① 업무처리 시간은 24시간/일, 365일/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은행”이 실시하는 마감업무 및 시스템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처리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② 자금정산은 <별첨2>의 “자금정산 방식 및 시간”에 따른다. 다만, “은행”의 시스템사정, 경영정책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동 정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5조(계좌의 지정)

- ① “회사”는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모계좌(외화)”와 “수수료인출계좌”인 원화예금 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구 분	예금종류	통화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모계좌		외화		
수수료인출계좌		원화		

- ② “입금모계좌” 또는 “수수료인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내용을 “은행”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입금업무 처리)

- ① 외화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전신환등 즉시 출금이 가능한 외화자금만 가능하며, 현금화 기간이 필요한 외화수표 등은 입금 가능 수단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은행”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회사”의 외화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정한 입금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등에 의해 별도의 확인을 요하는 거래는 동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은행”의 거래 영업점을 통해 수작업 이체처리 합니다
- ③ “은행”은 “회사”의 외화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회사”에 전송 또는 조회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 ④ 외화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모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외국환거래 규정”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등 해당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7조(입금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화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과 “회사”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 확인사항 중 “은행”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의한 거래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와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회사”에 별도 통지합니다.

제9조(거래의 취소)

“은행”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은행”의 전산시스템 오류,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은행”은 “회사”에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수수료)

- ① 수수료의 산정 및 징구기준은 <별첨>의 "외화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 ②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하며 “회사”가 시행일 전일까지 이의사실을 통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단, 시행일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회사”의 수수료인출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 인출합니다.
- ④ 서비스이용수수료 이외의 외국환 관련 제수수료는 “은행”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11조(효력 및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은행”이 “회사”에 대하여 본 금융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감독행정기관의 승인(인,허가를 포함합니다)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승인이 있는 날부터 발효합니다.
-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은행”은 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의 통지에는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제12조(계약해지)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3조 제2항 제2호의 “입금”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제3조 제1항에 기재한 사용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4. “회사”가 금융관계 법규위반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 “은행”과 “회사”는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 관련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회사”에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별첨의 "외화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와 동시에 “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중지)

- ① “은행”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에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2조 제2항 제2호의 “입금”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서비스를 “회사”가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은행”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제14조(전산운영)

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영사항은 “은행”과 “회사”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5조(기밀유지)

- ① “은행”과 “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기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책임)

- ①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제 의무위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 ② 고객에 대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의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17조(의무사항)

- ① “은행”과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가상계좌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자(이하 “입금자”라 합니다)가 입금자 본인의 소유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하지 않는 가상계좌는 “은행”에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8조(준용사항)

본 외화가상계좌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외화가상계좌 및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제규정을 준용하며, 외환거래 기본약관 및 관련 제규정과 지침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19조(기타)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합의 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업무 진행 중에 감독행정 기관(유관기관 포함)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관련 업무 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의 사유가 아닌 타행 등의 이의제기로 인한 금융공동망 사용불능 등의 금융환경의 변화 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은행”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20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1조(특약사항)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장

(인)

회사: 주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별첨1 > 외화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

수수료 구분	표준수수료	적용수수료	수수료 부과기준
계좌개설서비스 수수료	계좌당 500원	계좌당 ____ 원	가상계좌 개설 후 <u>최초 입금시 1회</u> 징구
입금서비스 수수료	건당 1,000원	건당 ____ 원	가상계좌로 <u>입금 거래 발생시 매회</u> 징구 (최초 입금 거래도 해당됨)
월최저수수료	10만원 이상	____ 만원	매월 계좌개설서비스수수료와 입금서비스 수수료의 합계가 월최저수수료 이하인 경우

▶입금 또는 송금인이 당/타행 및 외국환은행에서 외화가상계좌로 입금, 송금하는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각 은행에서 정한 별도의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입금 또는 송금인이 부담합니다.

< 별첨2 > 자금정산 방식 및 시간

구 분	내 용	비 고
정 산 일	<input type="checkbox"/> 입금당일정산 <input type="checkbox"/> 입금후 ____영업일에 정산	영업일 기준
정산방식	<input type="checkbox"/> 실시간 입금 <input type="checkbox"/> 일괄정산	
정산시간	거래시간 00:20 ~ 16:30 → 16:30 경 거래시간 16:30 ~ 23:40 → 23:40 경	「일괄정산」 방식만 해당됨

-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 00:20 ~ 23:40(평일/휴일 동일함)

< 별첨3 > 가상계좌 발급좌수 및 예금주명 표기방식 등

구 분	내 용	비 고
가상계좌 발급좌수	신청좌수: _____좌	사유:
예금주명 표기방식	<input type="checkbox"/> 예금주명만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금주명 +부기명	부기명 표기 사유 및 부기명 내용:
가상계좌 재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재사용 <input type="checkbox"/> 1회만 사용	'1 회만 사용' 선택시 입금거래가 발생한 계좌는, 입금거래 익일일에 자동 해지됨
가상계좌별 입금횟수 제한	<input type="checkbox"/> 제한없음 <input type="checkbox"/> 매월 ____ 회 이하 가능	동일 가상계좌에 입금 가능한 횟수를 의미함

- 부기명 이용방법은 부가통신사업자(VAN) 앞 문의

▣ 계약시 필요서류, 회선설치 및 사용료 등 안내

- 필요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②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④입금모계좌 및 수수료인출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회선신청, 회선비용, 이용 프로토콜, 회선중단장치 설치, 제휴기관의 자체 S/W개발비등 제비용은 제휴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기타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양자가 합의하여 정함